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3 선고 2023나72976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9. 3 선고 2023나72976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4 선고 2023가소1982314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7. 23.

판결선고 2024. 9. 3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0. 24. 선고 2023가소1982314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3,900,000원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(주) C는 2017. 1. 9. D에게 3,900,000원을 변제기 2022. 1. 8.,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27.9%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피고는 같은 날 D의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D는 2018. 12. 26.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

다. 한편, (주) C는 2018. 8. 31. 원고와의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금 채권을 양도하고, 2018. 9. 7.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이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에게 3,900,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주장 및 판단

피고는,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, 주채무자의 면책으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조휴옥, 판사 성지호, 판사 김현미